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<input type="radio"/> 납부서 발송 인용조문 (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4항)	<input type="checkbox"/> 인용조문 변경 반영 <input type="radio"/> 납부서 발송 인용조문 (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5항) ※제4항 신설에 따라 제5항으로 이동

□ 개정내용

- 납부서 발송 근거조항 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인용 조문 정비(지방세법 §95④ → §95⑤)

□ 적용요령

- 2026. 1. 1. 부터 시행(부칙 §1)
 ※ 인용조문을 단순 정비 한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

② 개정조문

<지방세특례제한법>

개정 전	개정 후
제167조의3(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 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) ① (생 략) ②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	제167조의3(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 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) ① (현 행과 같음) ② ----- 제95조제5항 ----- -----